

대학원 학칙

제정 1980. 3. 1. 규정 제 39호
 개정 1981. 6. 4. 규정 제 84호
 개정 1982. 3. 1. 규정 제 89호
 개정 1982. 7. 27. 규정 제105호
 개정 1983. 3. 1. 규정 제147호
 개정 1983. 12. 13. 규정 제179호
 개정 1984. 12. 21. 규정 제204호
 개정 1989. 1. 12. 규정 제271호
 개정 1991. 3. 27. 규정 제312호
 개정 1994. 9. 7. 규정 제363호
 개정 1998. 12. 9. 규정 제434호
 개정 1999. 3. 1. 규정 제445호
 개정 1999. 10. 15. 규정 제473호
 개정 1999. 12. 10. 규정 제480호
 개정 2000. 3. 1. 규정 제487호
 개정 2000. 7. 5. 규정 제507호
 개정 2000. 12. 1. 규정 제514호
 개정 2001. 7. 19. 규정 제528호
 개정 2002. 6. 18. 규정 제571호
 개정 2002. 11. 6. 규정 제578호
 개정 2003. 3. 26. 규정 제598호
 개정 2003. 9. 4. 규정 제606호
 개정 2008. 4. 17. 규정 제708호
 전문개정 2008.10.31. 규정 제727호
 개정 2010. 8. 20. 규정 제805호
 개정 2010. 11. 3. 규정 제807호
 개정 2012. 2. 15. 규정 제835호
 개정 2012. 6. 14. 규정 제844호
 개정 2012. 9. 19. 규정 제851호
 개정 2013. 2. 15. 규정 제871호
 개정 2015. 1. 29. 규정 제910호
 개정 2015. 3. 27. 규정 제913호
 개정 2015. 4. 30. 규정 제917호
 개정 2015. 8. 31. 규정 제918호
 개정 2015. 12. 18. 규정 제926호
 개정 2015. 12. 31. 규정 제929호
 타규정 개정 2017. 3. 13. 규정 제953호
 개정 2017. 3. 22. 규정 제954호
 개정 2017. 07. 25. 규정 제968호
개정 2018. 02. 22. 규정 제9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대학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한국학 제 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탐구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5-0-1. 대학원학칙

제3조(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교육목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7.3.22.>

제4조(학부 및 전공,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부 및 전공,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010. 8. 20, 2010. 11. 3.>

② 전공 내에서 학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상 세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전공의 운영은 전공 운영에 준한다. <신설 2010. 11. 3.>

③ 대학원의 학부 또는 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수요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 교원의 수, 교육과정 등이 적정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신설 2017.3.22.>

④ 대학원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22.>

제 2 장 입 학

제5조(입학 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지원 자격) ①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과정

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전형은 다음에 의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017.3.22.>

1. 필기시험 <2017.3.22.>

2. 서류심사

3. 면접 및 구술시험 <2017.3.22.>

③ 제2항에 의한 입학전형의 일정 및 세부사항은 모집 시기에 이를 공고한다.

④ 특별전형의 대상,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학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안에

입학등록을 마치면 원장은 입학을 허가한다.

제10조(정원 외 입학) 제6조의 입학지원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각 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1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당해 연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재입학할 경우에는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2012.6.14., 2017.3.22.>

③ 제51조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2017.3.22.>

제12조(편입학) ①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원장은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편입학할 경우에는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2017.3.22.>

② 석사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017.3.22.>

③ 박사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유사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④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017.3.22.>

⑤ 편입학 전형절차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2017.3.22.>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차 또는 3차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입 전공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3.22.>

③ 전입 전공은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 및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17.3.22.>

④ 전공을 변경한 자가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 전공교수의 의견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2017.3.22.>

제3장 등록과 수강신청

5-0-1. 대학원학칙

제14조(등록) 등록은 매 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2012.6.14>

제15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전공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수강교과목 취소)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 또는 전공교수의 확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수강과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교과목은 1 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수료생 논문연구등록) ①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거나, 본원 제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논문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7.3.22.>

② 논문연구등록을 한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6.14., 2017.3.22.>

③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료생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연구등록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02.22.>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한 자로서 「학위수여 규정」 제6조의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이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학원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3. 기타 논문연구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장 수 업

제18조(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방학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22.>

제19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 기타 사변 및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2017.3.22.>

제20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방법은 강의실 수업, 연구참여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2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여름방학·겨울방학
3. 연구원 개원기념일
4. 연구원에서 휴무일로 정하는 날<2012.9.19>

②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22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는 각 과정의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단, 편입학한 자는 수업연한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3년을,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한 자의 경우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자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재학기간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포함한다.

제6장 교육과정과 수료

제24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장이 정한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2017.3.22.>

② 교과과정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교과목의 분류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강좌개설) 개설강좌는 매 학기 각 전공 또는 교학처장의 신청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2012.2.15., 2017.3.22.>

제26조(시험 및 성적인정) ①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시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과목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27조(학점 이수)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주당 1시간 및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연구참여과목, 현장학습과목, 한국학특강 과목의 경우 주당 시간 및 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0-1. 대학원학칙

<2017.3.22.>

② 학점은 매 학기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연구성과학점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7.3.22.>

④ 재입학의 경우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한다.

제28조(성적과 평점)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3분의 2이상 출석), 연구보고서,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 적	A			B			C			F		
	A+	Ao	A-	B+	Bo	B-	C+	Co	C-	F	S	U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0	통과	비통과

②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 A, B, C만을 인정한다.

③ 학점부여 이외 모든 교과목의 평가는 ‘통과(S)’, ‘비통과(U)’로 한다.

④ 학업성적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0조(수료인정) ① 석사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2015.8.31., 2017.3.22.>

② 박사과정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2015.8.31., 2017.3.22.>

③ 각 과정별 수료를 위한 이수학점의 평점 평균은 2.7 이상이어야 한다.

제7장 논문 지도 및 학위 수여 <2017.3.22.>

제31조(지도교수) ① 학생의 수업과 연구,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집필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2017.3.22.>

② 논문 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7.3.22.>

제32조(학위수여) ① 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7.3.22.>

② 학위의 청구 및 수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7.3.22.>

③ 타 대학원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공동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7.3.22.>

제 8장 휴학·복학·제적·자퇴 등

제33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수업 주수의 3분의 2 이내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효력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017.3.22.>

②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복무, 대체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관련 증빙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2.6.14., 2013.2.15., 2017.3.22.>

③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학기간은 각 과정 모두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학한 자는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3.22.>

⑤ 임신·출산이나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남학생 포함)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학기 이내에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3.2.15.>

제34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 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6.14., 2017.3.22.>

제35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퇴학의 효력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017.3.22.>

제36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제37조(이중학적금지) 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국내에서 이중학적을 가지지 못한다. 단, 평생교육기관, 사이버대학 등 정시제 대학원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5.01.29., 2017.3.22.>

제 9장 교원 및 조직

제38조(교원) 대학원의 교원은 인사규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수직이고, 전임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 학부별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2012.9.19>

제39조(전임 교원의 책임직무) ① 전임 교원은 책임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9>

② 책임직무는 원내 강의, 책임직무과제, 원내 봉사로 구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2.9.19., 2017.3.15.>

제40조(직원 및 조교) 대학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둔다.

5-0-1. 대학원학칙

<2012.9.19.>

제41조(강사) 대학원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비전임교원) 원장은 석좌교수, 초빙강의교수,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

제43조(학부장) ① 대학원에는 학부장을 둘 수 있다.

② 학부장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학부장은 해당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17.3.22.>

제44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학처장과 각 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전임 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015.01.29., 2017.3.22.>

③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임용 또는 위촉 기간으로 한다. <2017.3.22.>

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부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단,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심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17.3.22.>

제45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6.14>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6.14.>

제46조(학생생활상담소) ①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생생활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생활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017.3.22.>

②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18.>

제 10 장 학생활동

제47조(학생회) ①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중에서 학생회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8조(과외활동) 학생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적으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9조(간행물) 학생회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훌륭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 원장은 재적생 및 수료생이 이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018.02.22.>

② 제1항의 징계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1.3., 2018.02.22.>

제 12 장 등록금 및 재정지원

제52조(등록금) ①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2.6.14>

② 학사운영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연구등록금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등록 기간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지한다. <2012.6.14>

④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6.14>

1. 기초과목 및 한국문화학당 한국어를 포함하여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제53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12.6.14., 2017.3.22.>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한 경우 <2017.3.22.>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0-1. 대학원학칙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사유 발생 시기	반환 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54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5조(수혜금액의 환수) 원장은 제35조에 의해 퇴학을 허가하거나 제51조에 의해 제적할 때에는 재학 중 수혜된 금액을 환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을 정한다. <2017.7.25.>

제13장 지체부자유자 지원 <2017.3.22.>

제56조(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배려 및 지원 등) ① 대학 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지체부자유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2017.3.22.>

② 지체부자유자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체부자유자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2017.3.22.>

제14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제57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생의 입학지원 자격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015.3.27.>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2.6.14>

③ 연구과정생은 수강등록 기간에 1강좌 이상의 수강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연구과정생의 논문 지도교수는 1차 학기 1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과정 이수증

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정생이 연구기간 중 그 신분예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이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012.6.14., 2017.3.22.>

제58조(공개강좌) ① 정규과정 이외에 교양 또는 연구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장 학칙 개정

제59조(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학칙 및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규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예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규관리 주관부서에 제·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017.3.22.>

제60조(예고의 생략) 학칙 및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17.3.22.>

1. 학칙 등 상위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3. 긴급을 요하는 규정의 개정
4. 원규관리규정시행세칙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되, 198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1988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1. 대학원학칙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그 시한은 1994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1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4년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당시 석사과정 2차 학기 이내에 재적중인 자는 통합과정 해당 학기로 전입한다.
 - 나. 이 학칙 시행 당시 석사과정 3차 학기 이상의 재적생 및 박사과정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통합과정 신입생 및 통합과정 전입생에게 적용한다.
- ② (경과 조치)
 -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적생은 각 과정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중 미이수과목은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1) 연구 학점 미이수자는 미이수 학점을 개별 학습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학점을 대체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학습을 수강할 수 있다.
 - 2) “한국문화특강” 교과목 미이수자는 공통필수 과목 중에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이 학칙 시행당시 통합과정 전입생이 “한국문화특강” 및 “한문”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해당 학점을 부여한다.
 - 1) “한국문화특강” 교과목 이수자에게는 공통필수과목 중 2과목 이내에서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한문” 교과목 이수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한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당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적생의 전공은 입학전형 시 응시한 전공과목 해당 분야로 전공을 분류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학칙에 의한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신입생 및 전입생, 연구과정생에게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당시 통합과정 4차 학기 이내에 재적 중인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석사과정 해당 학기로 전입하거나 통합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 취득희망원을 제출한 자는 반드시 석사과정 해당 학기로 전입하여야 한다.

나. 이 학칙 시행 당시 동중계 석사학위를 인정받아 통합과정에 재적 중인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박사과정 해당 학기로 전입하거나 통합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

다. 통합과정 자격심사 통과자는 통합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통합과정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5-0-1. 대학원학칙

마.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한 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되는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 전공을 유지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되는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 제 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에 의한 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나. ‘가’호에 의해 변경된 전공으로 전입한 학생의 기초과목, 외국인을 위한 전공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내역은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종합시험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전공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 변경되는 전공의 교과과정표, 종합시험 과목명 등은 이 학칙에 의한 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 학부 및 전공을 유지한다.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3조(전공변경)에 따라 전공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가’호에 의해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내역은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전공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전공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한국학부에서 수행한다. <2015.4.30.>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학고등연구소 운영 세칙 중 “융합한국학부”는 “글로벌한국학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13.> (연구업무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책임연구과제”를 “책임직무과제”로 한다.

부 칙 <2017.3.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전공 명칭 변경은 2017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문정보학” 전공의 재적생 또는 수료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학적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고전번역학(협동과정)” 전공은 2017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의 “한국문화학” 전공은 2017년도 후기부터 석사과정만 모집한다.

제3조(글로벌한국학부 학생 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전기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한국학부 학생의 수료 인정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7조의 2”를 “제39조”로 한다.

② 「연구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제37조의2”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2017.07.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0-1. 대학원학칙

[별표 1] <2017.3.22.>

<학부 및 전공, 입학정원>

과 정	학 부	전 공	입학정원
석 사	인 문 학 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35명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사 회 과 학 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글로벌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고전번역학(협동과정)	
계	4개 학부	16개 전공	35명
박 사	인 문 학 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25명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사 회 과 학 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글로벌한국학부	고전번역학(협동과정)	
계	4개 학부	15개 전공	25명